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10000LAB COFFEE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6011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02-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0-13

www.10000lab.com
master@10000lab.com

만랩커피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만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만랩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67(신사동, 백인빌딩)

전화 : 070-8633-8398

팩스 : 02-6008-480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44-152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만랩	만랩커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67, 2층(신사동, 백인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11.11	2015.11.11	박경준	1544-1528	02-6008-4804
	법인등록번호	110111-5887760	사업자등록번호	887-87-0029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박경준/ (주)만랩	만랩커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67(신사동, 백인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경준	1544-1528	02-6008-480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아이 언가이 즈/박경 준	숙달돼지 외 8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67, 3층(신사동, 백인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경준	1833-6317	02-6008- 4804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 · 합 병 여부	기업명	영 업 표 지	인수 · 합 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식회사 얼바인컴퍼니	만랩커피	2024.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3, 4층 4596호(논현동)	전종철, 이주영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가 향후 영위할 만랩커피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 칭	만랩커피	

상 호	만랩커피 OO점	
상표(서비스표)	만랩 10000LAB 	등록번호 : 45-0048058-0000 등록번호 : 45-0048052-0000 등록번호 : 40-2025004-6339
	10000 LAB 	일반타입
기타 영업표지		투고타입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1,716,746	1,762,106	-45,360	6,343,573	-4,914	-67,190
2023년	2,198,919	2,177,089	21,830	9,146,944	285,353	216,550
2022년	2,545,301	2,740,021	-194,720	7,898,551	-539,989	-1,472,860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박경준	사내이사	2015.11.11~현재	사내이사	가맹경영 총괄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주당맛집(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다미조 (등록번호 : -)라는 영업표지의 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2.08.19. ~현재	세겹단(등록번호: 20210013)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1.01.31. ~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우겹다짐 (등록번호 -)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 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0.09.16. ~현재	챙길 밥(등록번호 20201121)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0.08.19. ~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철든놈익스프레스(철든놈EXP)(등록번호 -) 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0.08.19. ~현재	두돈까스 (등록번호 20200828)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0.04.22. ~현재	치교치밥&치킨 (등록번호 20200686)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17.09.15. ~현재	숙달돼지 (등록번호 20171553)이라는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0.05.29. ~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감자탑(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0.04.25. ~현재	치고치킨 (등록번호 20200505)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0.04.23. ~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찐분식 (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덮밥제작소(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1.06.01. ~현재	계념찜닭(등록번호20210261)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1.08.01.~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에월국밥(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1.03.29. ~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토끼시장분식(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1.08.23. ~현재	히포슈가(등록번호20211709)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2.11.08~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크라운부대찌개(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라라피자(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치탐(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하이차이(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2.10.14~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닭터케이(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2.03.15~현재	김치백서(등록번호20211770)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전도사(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2022.10.27~2025.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인생부처스(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오프샐러드(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피터버거(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포포콴(등록번호-)이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훌륭회(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계열회사	(주)아이언가이즈	가맹사업 경영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가이즈딜리버리(등록번호-)라는 영업표지의 사업경영
가맹본부	(주)만랩	가맹사업 경영	2015.10.14 ~ 현재	만랩커피 (등록번호 : 20160116)라는 영업표지의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만랩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3.01.27. 출원 2014.03.12. 등록	제 45-0048058-0000호	주식회사 만랩	2034.03.12 (2034.03.12)
10000LAB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3.01.27. 출원 2014.03.21. 등록	제 45-0048052-0000호	주식회사 만랩	2034.03.21 (2034.03.21)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23.10.11. 출원 2025.04.08. 등록	제 40-2025004-6339호	주식회사 만랩	2035.04.08 (2035.04.08.)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만랩커피 가맹사업 현황

1. 만랩커피를 시작한 날 : 2015년 10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5년 10월 14일)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2. 만랩커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만랩	만랩커피	박경준	2015.12.10~ 2024.05.2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67(신사동, 백인빌딩)
주식회사 알바인컴퍼니	만랩커피	전종철, 이주영	2024.05.22 ~ 2024.07.1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2길 13, 4층 4596호(논현동)
주식회사 만랩	만랩커피	박경준	2024.07.16~현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67(신사동, 백인빌딩)

3. 만랩커피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만랩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5	125	–	106	106	–	84	84	–
서울	41	41	–	33	33	–	26	26	–
부산	3	3	–	4	4	–	3	3	–
대구	6	6	–	3	3	–	3	3	–
인천	5	5	–	5	5	–	4	4	–
광주	3	3	–	2	2	–	2	2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1	1	–	–	–	–
경기	41	41	–	43	43	–	32	32	–
강원	2	2	–	1	1	–	1	1	–
충북	2	2	–	1	1	–	1	1	–
충남	3	3	–	3	3	–	2	2	–
전북	2	2	–	2	2	–	2	2	–
전남	5	5	–	3	3	–	2	2	–
경북	5	5	–	3	3	–	4	4	–
경남	5	5	–	2	2	–	2	2	–

제주	1	1	-	-	-	-	-	-	-
----	---	---	---	---	---	---	---	---	---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5. 바로 전 3년간 만랩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139	12	-	26	10	125
2023년	125	11	-	30	5	106
2024년	106	1	-	23	9	84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6. 만랩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의 만랩커피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대표이사) ((주)아이언가이즈 / 박경준	(주)아이언가이즈 / 박경준	숙달돼지	20171553	기타외식	26/1	14/0	7/-
		챙길 밥	20201121	한식	80/1	58/1	41/-
		두돈까스	20200828	서양식	25/1	13/1	9/-
		치교치밥&치킨	20200686	한식	121/1	89/1	64/-
		치교치킨	20200505	치킨	39/1	30/1	25/-
		세겹단	20210013	한식	13/1	11/1	6/-
		계념찜닭	20210261	한식	6/1	3/1	2/-
		히포슈가	20211709	기타외식	39/1	23/1	23/-
		김치백서	20212770	한식	65/1	39/1	36/-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만랩	만랩커피	20160116	커피	125/0	106/0	8/-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만랩커피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84	139,825	7,013	629,114	84,052	19,762	1,412	83 곳 산정	
서울	26	173,395	9,379	530,598	29,829	44,915	3,689	26 곳 산정	

부산	3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대구	3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인천	4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광주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기	32	127,978	7,681	629,114	84,052	26,330	2,050	32 곳 산정
강원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북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전남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북	4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경남	2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 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84개가 아닌 실제 8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 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8. 만랩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만랩커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일)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84	1,730일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광고	(비공개)	연중	25,939	
판촉			14,691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11.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강남역지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 준빌딩	02-3481-2713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며(계좌가 없는 경우 개설하여야 합니다.)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예치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예치 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기업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9,9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 및 점포설사 등의 비용으로 소모됨	
교육비	4,400	계약 체결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가맹금의 반환사유

-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②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키고, 그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③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④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⑤ 개점 전 교육비는 "을"이 가맹점 개점 전 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각 과정별로 50% 미만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과정에 한하여 50%를 반환한다.

위 ①~④ 경우로 귀하의 가맹금 반환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 당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며, 가맹금의 반환범위는 전체 가맹계약기간 중 계약 이행기간의 비율은 고려하며, 이미 계약을 이행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계약이행보증금	1,000	계약 체결일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거래 보증금은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으로 금전지급 의무위반, 손해배상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치기관인 기업은행과 가맹금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900
가맹비	5,500
교육비	4,4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1,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별지 참조	77,605	-	계약 물품 또는 입고 시	공사/공급 천 계약취소	33㎡(10평)기준
인테리어		22,000	2,200			별도공사제외
간판 및 사인		7,700	-			전면3M기준(H:350)
주방기기설비		27,500	-			
의탁자		2,200	-			2인테이블 5SET 기준
홍보물		1,100	-			액자,인쇄비품 등
초도주방용품		1,760	-			
초도물류		5,500	-			기기 및 기물
POS/키오스크		5,280	-			
DID/음향		4,565	-			43' 3대

- 상기 금액은 상권 및 입지, 점포 형태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증설, 용도변경, 정화조, 소방설비, 철거, 데크, 계단, 화장실 냉난방 등은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등을 진행할 경우 관련 정보제공과 검수에 대한 비용으로 매장 평당 일금 사십만원(₩400,000)<부가세 별도>을 검수비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은 제경비가 10% 정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입지선정 주체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 입지를 선정	
점포 기준	실면적: 33m ² (10평이상)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상권 및 점포특성에 따라 오픈 가능) 전기용량: 최소 15Kw 이상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각종 인허가: 보건증,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정화조용량, 소방설비 등	
점포 선정	가맹점 사업자 점포 확보시 - 상권조사 실시 가맹점 사업자 점포 미 확보시 - 점포 물색 후 최종 희망 점포 상권조사 실시	
상권조사	상권 내 지역정보 수집 - 인구통계자료 및 특정기관 조사정보(통계청, 소상공인진흥원 자체상권프로그램 등) - 지역 상권현황 조사 후보점의 입지분석 - 배후 수요지 및 주거형태 파악(연령별, 성별 구성비 등) - 주요 경쟁점 및 잠재 경쟁점 파악 - 권리 분석 및 시세조사 - 유동인구 주동선 파악 - 시계성, 연출성 파악 입지 유형별 상권분석 - 유사 비교 대상점 선정 및 분석	
출점결정	- 상권조사에 따른 출점 가·부 결정 - 가맹점 사업자 최종 결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 · 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규정한 점주 교육과정 수료 정기교육, 보수교육 이수(재계약 조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세 이상일 것, 교육을 이수할 것
종업원	가맹점 실제 운영자 (가맹점관리자)인 경우 점주 교육과정 수료	가맹점 사업자의 권한으로 채용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점포 종업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종업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 위생 관리 및 가맹점 서비스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 실제 운영자(가맹점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만랩커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여 설비·비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및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220	매월 1일	없음	소멸성 비용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시행 이전	광고 시행 이후	미 통지 시 본사부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반환되지 않음	행사 시행 이후	공동 판촉에 한함
물품대금	가맹본부	상품, 부재료의 일정 마진	기본 여신 한도	물품의 하자있는 경우	-	공동 판촉에 한함
보수교육	가맹본부	440	대금 청구	반환되지 않음	교육완료 이후	가맹점 위생관리 및 서비스 미흡 점포에 교육 실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 보수비 용	가맹본부	개별산정 교체 및 보수건의 견적산출	대금청구	반환되지 않음	교체 및 보수 완료 이후	교체 · 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 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착공 시	착공 전	공사완료 이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되지 않음	금전의무의 지체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 조치 및 보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

- 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관리 · 감독	방법	빈도 및 시기	문의 및 담당
위생 상태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담당 슈퍼바이저
품질 관리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담당 슈퍼바이저
친절도 및 클레임 관리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담당 슈퍼바이저

3)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로열티, 광고비,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품목을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 중에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명의인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여 귀하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자체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원자재, 인건비, 운영비 등 복합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차액가맹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이와는 별도로 당사는 당사 및 가맹점 사업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에 관한 비용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만랩커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BI 또는 SI 가 적용된 제품, 인테리어, 설비시설, 집기비품, 온/오프라인 컨텐츠 등의 사용 또는 게시 중단, 철거해야 하며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해야 합니다.
- ② 전 항의 중단,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③ 귀하는 본 계약의 종료(기간만료, 해지, 양도 모두 포함) 시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당사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는 귀하가 본 계약 각 조, 각 호의 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지연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가 계약 종료의 조치를 제3자에게 선조치하게 한 후 그 비용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부터 공제하거나 귀하에게 청구합니다.
- ⑥ 만약 고객이 귀하에게 선불로 결제한 금액이 있다면 고객 미사용분에 대해 귀하는 고객에게 반환을 해야 하며, 미반환 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가 고객에게 대납할 수 있으며, 대납 시 귀하는 당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만랩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만랩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의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의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지 참조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 당사 (1544-1528)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구입 및 임대,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가맹점운영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홈페이지 또는 공문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대금의 결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편리성을 위하여 물품주문을 위한 여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정하는 기본 여신한도 내에서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만랩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로 설정 (점포 중심 원형 상권, 특수상권은 제외)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지 우선

- 단 특수상권(특수상권이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6차선 이상 도로 및 하천, 구릉 등과 부동산 공법상 지역, 지구개발로 인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나 이로 인한 새로운 쇼핑가 및 집객시설 등 상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 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지정된 영업지역이 아닌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및 가맹점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 귀하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영업지역조정 및 신규가맹점 개설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가맹점 총 매출액)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0%	0.0%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직영점	
2024	100.0%	0.0%	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만랩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재계약 시점부터는 1년씩 갱신되며 가맹사업자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③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D-180 ~ D-90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다? 예→B, 아니오→D	D-180 ~ D-90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재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계약서 별첨1.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3회이상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 제 35 조, 제 36 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판매기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 준수에 관한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만,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을"이 부담 하는 교육 · 훈련비용이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기타 가맹사업법 및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 33조 2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계약상의 공급품 대금 및 기타 채무의 미지급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5조 인테리어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6조 교육 · 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0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1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2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6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7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34조1항 각호

- 가맹계약서 제28조 광고 및 판촉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9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39조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41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법事實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事實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事實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계약갱신이나 재 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당사 및 가맹점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즉시 계약 해지 사유 (상호간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 ○ 천재재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1항 각호

- 가맹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은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종료시 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가맹점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제12조 가맹점의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4조 2항 1호
○ 당사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4조 2항 2호
○ 당사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불이행하여 "을"이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34조 2항 3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 전에 양도 신청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결정 후 신청접수(영업기간 중 계약 위반 또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미 승인)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본사교육 입소(신규점포 교육 동일)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1544-1528)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과 모든 권리의 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활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영업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경우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배우자 또는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만랩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커피를 취급하는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1544-152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만랩커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23:00	월2회 미만휴무	문의: 당사(1544-152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에게 운영 매뉴얼 및 영업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당사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관리 · 감독	방법	빈도 및 시기	문의 및 담당

위생 상태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담당 슈퍼바이저
품질 관리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담당 슈퍼바이저
친절도 및 클레임 관리	담당자 수시 방문	수시	담당 슈퍼바이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만랩커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상품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 → 가맹점의 행사 참여	사전 광고 계획 미공고시 가맹점 별도 부담 없음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	
판촉행사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별도 공지
가맹사업자 개별행사 (LSM행사 포함)		가맹사업자 부담 원칙			본사 사전승인

-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귀하께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을 하시려는 경우 귀하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가맹점은 만랩커피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영업규정,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 등 각종 자료를 임의

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41조 손해배상

-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을은 계약 해지 시점부터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과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을에게 반환한다.
- ④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자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자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자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제3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자체하는 경우 자연보상 금(자체 일수 × 1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을이 제22조 제7항(부당이득의 취급금지)을 위반할 경우 을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액에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
- ⑧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서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자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자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⑨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해손하는 등 사회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02-1544-1528), 인터넷홈페이지(www.10000lab.com) - 점포개발자 전화상담, 본사방문, 현장상담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계약체결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전제공)	가맹계약 14일 전	
점포계약	- 선정된 점포의 임대계약 또는 매매 계약	D-4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5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45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투자비 산출	D-43(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0(10일)	
오픈 준비사항 협의	- 컨설턴트와 판촉계획, 교육스케줄 등 협의	D-30	
제반 인허가 취득	-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소방필증	D-3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0(22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8(5일)	
기기, 가구 설치	- 머신, 기기, 냉장/냉동고, 제빙기 등 설치	D-3(1일)	
식자재 입고	- 식자재 입고 및 정리정돈	D-2(1일)	
시뮬레이션	- 음료제조, 오픈전 미흡사항 점검	D-1(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p>(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본사와 협의를 하지 않거나 본사의 승인 업이 점포 환경개선을 진행하여 브랜드 BI, SI 미 준수 시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본사의 매뉴얼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1544-152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본부 부담 또는 협의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및 조건	신용제공 조건
기업은행	가맹점 사업자	신용등급에 따른 최대 3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	가맹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가맹점 사업자 등의 정보 제공(대출서류)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돋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 당사는 만랩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주요내용	소요시간	장소	비고
이론	회사 소개, 메뉴제조 교육, 운영교육 등	5시간	당사 아카데미	필수 교육
실습	커피, 음료, 제조이론 실습	24시간	당사 아카데미	필수 교육
수료	이론 및 실무 테스트 진행	1시간	당사 아카데미	필수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별도통지	필요시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구 교육 -가맹본부에서 판단하여 가맹점사업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내용	실습 및 강의	별도통지	필요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4,400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실비	필요시 이수

교육 프로그램 및 일정,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단위: 년, 개월)
		비고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당사가 [만랩커피] 가맹사업을 인수하기 전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_1.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메뉴별 판매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재무제표(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제표(2023~2024)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